

사.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방화구획 및 배출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내지 제11조)

아. 전기저장장치의 화재안전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 자동소화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조항을 미적용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2조)

###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mailto: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방청공고제2020-151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소 방 청 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2019년 8월 6일자로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사항을 화재안전기준에 반영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수원·가압송수장치 및 비상전원 기준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를 인용하였으며 시행령 [별표 5]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기준에 반영함(간이헤드 기준개수 5개 및 방수시간 20분 적용 대상)(안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5항제1호 및 제7항, 제12조)

###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재청공고제2020-310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문 화 재 청 장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 6. 9.)으로 풍납토성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여, 문화재의 역사적 정체성을 조속히 규명하고, 지역주민과 문화재가 상생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

##### 2. 주요내용

가.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안 제2조)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하나,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는 우선하지 않도록 규정함

나.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신설)

- 풍납토성 보존·관리를 위해 마련하는 종합계획의 자료요청, 의견수렴, 공고방법 등에 대하여 정함

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신설)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과 의견수렴 절차를 정함

라. 기초조사(안 제5조 신설)

- 풍납토성 보존·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과 수행방법 등을 정함

마. 보존·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등(안 제7조 신설)

- 보존·관리구역의 지정등에 관한 고시 내용과 방법에 대해 정함